

# 평창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7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군의 관장사무 중 읍·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현실에 맞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
-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상수도관련 업무를 읍·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
- 지방자치법 위임조항 신설에 따라 군의 관장사무 중 일부를 군의회로 위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법에 맞게 개정
  - ▷ 평창군사무위임조례 ⇒ 평창군 사무위임조례
- 읍·면 위임사무 : [별표1]

### 〈복지업무분야〉

- ▷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조사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, 제22조)
- ▷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일부 변경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)
  - 자활소득변경, 가구원의 사망·출생·현역입대·교정시설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

### 〈건축 및 옥외광고물 업무분야〉

- ▷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중 신고대상 건축물
- ▷ 건축물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무 중 신고대상 건축물  
(※ 건축법 제8종에 의한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에 따른 '기재 및 변경'은 제외)
- ▷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신고대상 건축물
- ▷ 「건축법」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

- ▷ 「건축법」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· 징수 및 관련 사무(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)
- ▷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,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 사무(단, 당초허가대상 광고물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는 제외)

○ 군의회 위임사무 : [별표2]

- ▷ 별정직 · 기능직 ·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(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)
  - 신규임용, 승진임용,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면직, 해임, 파면

○ 군에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읍면 위임 삭제

- ▷ 입산허가, 산림내 취사신고필증 교부

○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상수도관련 사무 읍 · 면 위임 삭제

- ▷ 상수도사용량의 검침 및 상수도사용료의 납부고지
- ▷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
- ▷ 급수공사 위탁시행시 관리 및 책임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조례 제 호

## 평창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사무위임조례”를 “평창군 사무위임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읍 · 면”을 “읍 · 면, 군의회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임사항) ①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 · 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

②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 읍·면에 위임하는 사무명(제2조제1항 관련)

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령
1	○ 시장관리운영	○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9조
2	○ 시장사용허가	○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
3	○ 시장사용료 징수	○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
4	○ 주민등록과태료 부과·징수	○ 주민등록법 제21조의4
5	○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	○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
6	○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지신고	○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
7	○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	○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
8	○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징수	○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7조제8항
9	○ 읍·면직원의 소내 전보권	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
10	○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	○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
11	○ 불용품 매각처리	○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
12	○ 군유잡종재산 대부관리	○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
13	○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	○ 지방세법 제234조의22
14	○ 매·화장 신고	○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
15	○ 개장신고	○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
16	○ 개인묘지 설치(변경)신고	○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
17	○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도·감독	○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내지 제30조

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령
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·감독</li> </ul>	○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
1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(※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신고의 수리</li> <li>-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</li> <li>- 용도변경신고의 수리</li> <li>-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</li> <li>- 착공신고의 수리</li> <li>-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</li> <li>-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</li> <li>- 도로의 지정·폐지 및 변경(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5조)</li> <li>-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</li> </ul> </li> <li>○ 건축물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의 수리</li> <li>-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의 변경,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·정정 및 건축물 대장의 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※ 건축법 제8종에 의한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허가 에 따른 '기재 및 변경'은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- 건축물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(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)</li> </ul> </li> </ul>	○ 건축법 제71조제3항
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(※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</li> <li>-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</li> <li>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</li> <li>- 건축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li> </ul> </li> <li>○ 「건축법」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</li> <li>○ 「건축법」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·징수 및 관련 사무 (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)</li> </ul>	○ 건축법 제71조제3항

일련 번호	사 무 명	근거법령
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,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사무 (단, 당초허가대상광고물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는 제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</li> </ul>
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지법시행령 제41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지법 제37조제2항</li> </ul>
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지법 제56조제1항의 보고 및 검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지법 제56조</li> </ul>
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마재배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</li> </ul>
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읍면(마을)공동묘지사용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제28조</li> </ul>
2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조사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, 제22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자치법 제95조</li> </ul>
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일부 변경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활소득변경, 가구원의 사망·출생·현역입대·교정시설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자치법 제95조</li> </ul>

[별표2]

##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명(제2조제2항 관련)

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령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별정직 · 기능직 ·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규임용, 승진임용,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면직, 해임, 파면</li></ul>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</li><li>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</li></ul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평창군사무위임조례</u>	<u>평창군 사무위임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·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력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임사항) 군의 사무중 읍·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[별표] 와 같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읍·면, <u>군의회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임사항) ①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·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<u>별표1</u> 과 같다. ②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는 <u>별표2</u>와 같다.</p>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95조 (사무의 위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1994.12.20>

②~④ “생략”

제83조 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  
<개정 1994.3.16, 2006.4.28>

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6조 (임용권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<개정 1972.12.26, 1981.4.20, 1991.5.31, 1997.12.13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, 그 소속기관의 장,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1978.12.6, 1991.5.31, 1993.12.27>

③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<개정 1978.12.6>

## □ 건축법

제71조 (권한의 위임·위탁 <개정 2005.11.8>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1997.12.13>

②시·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·동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④ “생략”